

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

1. 제안경위

- 가. 발의자: 김기덕 의원
나. 의안번호: 제3294호
다. 발의일자: 2025년 10월 20일
라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독신가구 증가에 따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의 필요성 및 가치가 높아지는 시대가 도래함
- 특히, 유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 가운데, 자연과 하나 되는 산림 교육에 대한 관심 및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나, 실제 서울시는 이에 대한 체계적, 실효성 있는 추진 체계가 미흡함
- 이에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추구할 필요성에 기반한 산림교육 활성화 등의 지원을 위해, 산림교육 지원인력 및 예산 지원 범위 명시 등을 통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의 산림교육 확대를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책무조항 신설(안 제3조)
나.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 수립 조항 신설함(안 제4조)

- 다. 산림교육 사업추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(안 제5조)
- 라. 산림교육의 지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명시함(안 제9조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등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교육에 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을 위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교육 지원 인력 및 예산 지원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이 2012년 시행¹⁾되고 산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서울시는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(2020년)하여 산림교육 전문가 및 산림교육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있음.
- 본 조례안은 산림교육 사업추진(안 제5조), 산림교육 지원(안 제9조)에 관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는 등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교육 기회 확대 측면에서 이견 없음.
- 다만, 안 제4조제2항은 시장이 ‘지역계획’ 수립에 따라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‘운영계획’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나, 이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‘산림교육종합계획’ 및 그에 따른 ‘지역계획’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중복 되는 것으로 입법 체계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9조는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는 ‘법 제20조²⁾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’를, 제2호부터

1)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[시행 2012. 7. 26.] [법률 제10940호, 2011. 7. 25., 제정]

2) 제20조(지원)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
-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
-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
-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
-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
-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

제4호까지는 학교, 어린이집, 유치원 및 기타로 지정하면서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‘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’로 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법 제20조제3호에서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산림교육전문가를 규정하고 있는바, 위 단서 조항은 중복 규정일 뿐만 아니라 자칫 지원 범위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.